도·농복합형태의시 특별지원 약속이행 촉구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1996. 7. 19.
내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재근의원외 19인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1996년 7월 9일

. 회부일자 : 1996년 7월 10일

다. 상정일자 : 제127회 임시회

. 제2차 내무위원회(1996.7.19.)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요지

(제안설명자 : 김재근의원)

가. 주 문

도·농간의 균형발전도모,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 광역행정의 효율적추진을 위한다는 명목아래 추진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특별지원 약속을 조속히 이행토록 청와대, 국무총리실, 내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충청북도지사에게 촉구하기 위함.

나. 제안이유

○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의 대통령령을 조속히 제정함과,

○ 민의전달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토록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중제22조제2항중 도의원 정수를 현행기준대로 유지토록하고,

○ 도·농 통합당시 약속한 특별지원의 조속한이행을 통하여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전문위원 검토요지

(전문위원 오 창 환)

금번 도·농 복합형태의 시 특별지원 약속이행 촉구결의 안 표명의 당위성 내지는 불가불성을 살펴볼때,

정부차원에서의 정책결정을 통하여 도심지 주변에 인접한 도·농간의 통합을 추진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인 행정낭비요소를 줄이고 투자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인위적으로 분리된 동일생활권을 통합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주민생활에 관련한 행정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통합형태의 시를 이룸으로써 절감되는 예산을 지역개발비로 전환 투자함으로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시군간의 격차를 줄이고 주민소득 사업에 재투자 한다는등을 내용으로한 통합진흥내용과는 다르게,

현재의 통합지역 대상자인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볼때 현 정부의 시책추진 방향은 당초의 공약내용과는 이질적이고도 상이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와같은 부분이 시정되고 모든분야에 있어서 공약한 바와 같이 추진되어 도·농지역이 통합됨으로써 오는 실질적인 지역발전 및 문화수준의 향상과 수혜 혜택등의 반사적 이익를 체감적으로 느끼고, 이루워지길 바라는 뜻에서 결의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또한 정부차원에 있어서의 도·농간 통합이후 농촌지역주민들의 소외 의식 가중과 기존 군단위 지역의 특성과 전통문화 소멸등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당초의 통합취지와 상응하고,
통합전 홍보 또는 공약한대로의 내용을 이행함으써 행정추진의 신뢰성확보 차원에서도 본 결의 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와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볼때 통합지역 주민들이 염원하는 필연적인 주민여론의 결정체라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발의원안과 같이 의결 (참석:7 , 찬성:7)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도·농복합형태의시 특별지원 약속이행 촉구결의(안)